

제 24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 363 조와 정관 제 19 조에 의거 제 24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26 년 03 월 30 일(월요일) 오전 10 시 00 분

2. 장 소 :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 컨퍼런스홀
(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 번길 20)

3. 회의 목적 사항

가. 보고안건 : 감사보고, 영업보고,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보고

나. 부의안건

제 1 호 의안: 제 24 기 (2025.1.1~2025.12.31)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 포함) 승인의 건

※ 현금배당 : 보통주 1 주당 306 원

제 2 호 의안: 정관변경의 건

제 2-1 호 의안: 사업목적 추가

제 2-2 호 의안: 코스닥 표준정관 반영한 문구정비

제 2-3 호 의안: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사유 규정 반영

제 2-4 호 의안: 상법 개정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 변경

제 2-5 호 의안: 상법 개정에 따른 독립이사 명칭 변경 및 인원 확대

제 2-6 호 의안: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충실의무 확대

제 2-7 호 의안: 상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 의결권 제한 강화

제 2-8 호 의안: 상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 분리 선출 확대

제 2-9 호 의안: 부칙

제 3 호 의안: 이사 선임의 건

제 3-1 호 의안: 사내이사 김성운 중임의 건

제 3-2 호 의안: 사내이사 Son Robert Inho 중임의 건

제 3-3 호 의안: 사내이사 최진호 중임의 건

제 3-4 호 의안: 사외이사 류재영 선임의 건

제 4 호 의안: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(류재영)

제 5 호 의안: 이사회에서 기 결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

제 6 호 의안: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

제 7 호 의안: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서 승인의 건
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(국민은행 증권대행부)에 비치하였으며,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실물증권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며,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

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.

6.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

우리회사는 「상법」 제 368 조의 4 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,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가.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: 「<https://vote.samsungpop.com>」

나. 전자투표 행사 기간 : 2026 년 3 월 20 일 오전 9 시~ 2026 년 3 월 29 일 오후 5 시

- 기간 중 24 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(단, 시작일은 오전 9 시부터, 마지막 날은 오후 5 시까지만 가능)

다.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, 카카오페이,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

라. 수정동의안 처리 :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(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 13 조 제 2 항)

7.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

- 직접행사 : 본인 신분증
- 대리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 날인), 인감증명서, 대리인의 신분증

8. 기타사항

-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「DART-정기공시」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 년 03 월 12 일

주식회사 실리콘투
대표이사 김성운 (직인생략)

[별첨 1]

제 2 호 의안: 정관 변경의 건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<p>제 2 조(목적)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1. 화장품 수출입업 및 무역업 및 도소매업</p> <p>1. 전자상거래</p> <p>1. 국제물류주선</p> <p>1. 운수 및 창고업</p> <p>1.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</p> <p>1. 부동산임대업</p> <p>1. 반도체 수출입업</p> <p>1. 디지털관련제품 수출입업</p> <p>1. 정보통신업</p> <p>1. 매니저업</p> <p>1. 엔터테인먼트 관련사업</p> <p>1. 화장품 및 미용관련 제품 제조</p> <p>1.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도소매업</p> <p>1. 식품, 식음료, 건강식품 도소매업</p> <p>1. 의류제품 및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소매업</p> <p>1. 스포츠용품 도소매업</p> <p>1.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</p>	<p>제 2 조(목적)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1. 화장품 수출입업 및 무역업 및 도소매업</p> <p>2. 전자상거래</p> <p>3. 국제물류주선</p> <p>4. 운수 및 창고업</p> <p>5.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</p> <p>6. 부동산임대업</p> <p>7. 반도체 수출입업</p> <p>8. 디지털관련제품 수출입업</p> <p>9. 정보통신업</p> <p>10. 매니저업</p> <p>11. 엔터테인먼트 관련사업</p> <p>12. 화장품 및 미용관련 제품 제조</p> <p>13.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도소매업</p> <p>14. 식품, 식음료, 건강식품 도소매업</p> <p>15. 의류제품 및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소매업</p> <p>16. 스포츠용품 도소매업</p> <p>17. 기타 금융 투자업</p> <p>18.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</p>	<p>사업목적 추가</p>
<p>제 8 조의 2 (주식 등의 전자등록)</p> <p>회사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할 수 있다.</p>	<p>제 8 조의 2 (주식 등의 전자등록)</p> <p>회사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	<p>코스닥 표준정관 반영한 문구정비</p>
<p>제 11 조 (신주의 배당기산일)</p> <p>회사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</p>	<p>제 11 조 (신주의 동등배당)</p> <p>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.</p>	<p>코스닥 표준정관 반영한 문구정비</p>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<p>제 12 조 (주식의 소각)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.</p>	<p>제 12 조 (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) 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.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. 1.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.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. 상법 제 360 조의 2 제 2 항, 제 360 조의 15 제 2 항, 제 523 조제 3 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.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</p>	<p>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사유 규정 반영</p>
<p>제 15 조 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 ① 회사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 월 7 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. ②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 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, 이사회의 결의로 3 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 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 15 조 (기준일) ①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코스닥 표준정관 반영한 문구정비</p>
<p>제 15 조의 2 (주주명부) 회사의 주주명부는 「상법」 제 352 조의 2 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.</p>	<p>제 15 조의 2 (주주명부 작성·비치)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 ② 회사는 5%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(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)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. ③ 회사의 주주명부는 「상법」 제 352 조의 2 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.</p>	<p>코스닥 표준정관 반영한 문구정비</p>
<p>제 16 (전환사채의 발행) ① ~ ③ (생략)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 1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제 16 (전환사채의 발행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 1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코스닥 표준정관 반영한 문구정비</p>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<p>제 19 조 (소집시기)</p> <p>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.</p> <p>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</p>	<p>제 19 조 (소집시기)</p> <p>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,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.</p>	<p>코스닥 표준정관 반영한 문구정비</p>
<p>제 28 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</p> <p>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을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 28 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</p> <p>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상법 개정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 변경</p>
<p>제 31 조 (이사의 수)</p> <p>회사의 이사는 3 인 이상 15 명 이하로 하고,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 분의 1 이상으로 한다.</p>	<p>제 31 조 (이사의 수)</p> <p>회사의 이사는 3 인 이상 15 명 이하로 하고,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 분의 1 이상으로 하되,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상법 개정에 따른 독립이사 명칭 변경 및 인원 확대</p>
<p>제 35 조 (이사의 의무)</p> <p>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 35 조 (이사의 의무)</p> <p>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고하여야 하고,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충실의무 확대</p>
<p>제 44 조(감사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40 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총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</p> <p>③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</p> <p>④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,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제 3 항 제 4 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—그의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	<p>제 44 조(감사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40 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총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.</p> <p>③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</p> <p>④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,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제 3 항 제 4 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	<p>상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 의결권 제한 강화</p>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<p>제 44 조의 2(감사위원의 분리선임·해임)</p> <p>① 제 44 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 1 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.</p>	<p>제 44 조의 2(감사위원의 분리선임·해임)</p> <p>① 제 44 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2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 1 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.</p>	<p>상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 분리 선출 확대</p>
<p><신설></p>	<p>제 1 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26 년 3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 2 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례) 제 28 조의 개정규정은 202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 3 조 (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)</p> <p>① 제 31 조, 제 44 조의 2 항의 개정규정은 2026 년 7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<법률 제 20991 호, 2025.7.22> 부칙 제 2 조 단서에 따라 2027 년 7 월 22 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제 4 조 (감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) 제 44 조제 5 항의 개정규정은 2026 년 7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칙</p> <p>-각 개정 상법규정 효력발생 시점 명시</p>

제 3 호 의안: 이사 선임의 건

구분	성명	출생년월	임기	주된 직업	주요약력
제 3-1호 (사내이사)	김성운	197205	3년	실리콘투 대표이사	1998~2000: 기륭전자 2000: 엠디아이코리아 2002~현재: (주)실리콘투 설립 대표이사
제 3-2호 (사내이사)	손인호 (Son Robert Inho)	196902	3년	실리콘투 CFO	2009~2014: Stonebridge Capital Inc CFO 2014~2015: Quvat Korea CO. Ltd, Representative Director 2015~2016: Ajin Clean, CFO 2016~현재: 주식회사 실리콘투 사내이사
제 3-3호 (사내이사)	최진호	196903	3년	실리콘투 COO	1996~1998 영풍정밀 1998~2011 동운인터내셔널 2012~현재 주식회사 실리콘투 사내이사
제 3-4호 (사외이사)	류재영	196906	3년	김·장·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	2005~현재 김·장·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 2023~현재 동국씨엠 주식회사 사외이사

구분	후보자 성명	추천인	체납사실 여부	부실기업 경영진 여부	법령상 결격사유 유무	최대주주와의 관계	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 내역
제 3-1호 (사내이사)	김성운	이사회	없음	없음	없음	없음	없음
제 3-2호 (사내이사)	손인호 (Son Robert Inho)	이사회	없음	없음	없음	없음	없음
제 3-3호 (사내이사)	최진호	이사회	없음	없음	없음	없음	없음
제 3-4호 (사외이사)	류재영	이사회	없음	없음	없음	없음	없음

제 4 호 의안: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(류재영)

구분	성명	출생년월	임기	주된 직업	주요약력
제 4호 (감사위원회 위원 [분리선출])	류재영	196906	3년	김·장·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	2005~현재 김·장·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 2023~현재 동국씨엠 주식회사 사외이사

구분	후보자 성명	추천인	체납사실 여부	부실기업 경영진 여부	법령상 결격사유 유무	최대주주와의 관계	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
제 4호 (감사위원회 위원 - 분리선출)	류재영	이사회	없음	없음	없음	없음	없음

제 5 호 의안: 이사회에서 기 결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

가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

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임직원 총 4 명을 대상으로 총 200,000 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2025 년 9 월 23 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부여하여 주주총회를 통해 보고 및 승인을 받고자 함.

나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

성명	직위	직책	교부할 주식	
			주식의종류	주식수
○○○ 외 3명	직원	직원	기명식 보통주	200,000주
총(4)명	-	-	-	총(200,000)주

다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,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, 그 행사가격,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

구 분	내 용	비 고
부여방법	신주교부	-
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	기명식 보통주 200,000주	-
행사가격 및 행사기간	행사가격 : 45,261원 (자본시장법 준용) 행사기간 : 2027년 9월 23일 ~ 2032년 9월 22일	-
기타 조건의 개요	1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, 주식배당, 준비금의 자본전입, 액면분할 및 합병 등으로 주식가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) 주주총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,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	-

라.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,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

-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

총발행 주식수	부여가능 주식의 범위	부여가능 주식의 종류	부여가능 주식수	잔여 주식수
65,576,252	발행주식총수의 15% (이사회 결의 시 3%)	기명식 보통주	9,836,437	50,000

- 최근 2 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, 행사 및 실효내역

사업연도	부여일	부여인원	주식의 종류	부여 주식수	행사 주식수	실효 주식수	잔여 주식수
2023년	-	-	-	-	-	-	-
2024년	-	-	-	-	-	-	-
2025년	2025.09.23	4	보통주	200,000	-	-	200,000
계	-	총(4)명	-	총(200,000)주	총(0)주	총(0)주	총(200,000)주

제 6 호 의안: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

구 분	당 기 (제 24 기)	전 기 (제 23 기)
이사의 수(사외이사 수)	8 (3)	7 (2)
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	70 억 원	60 억 원

제 7 호 의안: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서 승인의 건

1.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 목적

- 임직원 보상의 목적

2. 보유 또는 처분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, 취득방법

-2026.03.12 기준으로 현재 당사는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체결로 보통주 123,200주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임직원 보상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.

-위 보상목적으로 취득·보유 중인 자기주식 보통주 중 61,600주를 2027년 정기주주총회일 이전까지 보상용으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-2027년 정기주주총회일 이전 지급 후 남은 주식은 2027년 정기주주총회 이후의 보상목적으로 장기 활용할 계획입니다.

구분	주식의 종류	수량	취득방법 / 처분·보유 목적
현재보유	보통주	123,200주	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취득
처분·보유	보통주	61,600주	'27년 주주총회 이전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처분
	보통주	61,600주	'27년 주주총회 이후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보유

※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 제 341 조의 2 제 3 호의 단주처리로 인한 취득입니다.

※ 실제 처분 수량은 변동할 수 있습니다.

3. 보유 및 처분 전후의 주식 현황

기준일 : 2026.03.12

구분	보유 개시시점	예정된 처분 시점
자기주식 현황	123,200주	61,600주
자기주식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(발행주식총수 - 자기주식)	65,456,052주	65,514,652주
발행주식총수	65,576,252주	65,576,252주
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 (자기주식/발행주식총수)	0.19%	0.09%

※ 보유 개시시점은 '26 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(2026. 03. 30)을 의미하며, 예정된 처분시점은 '27 년 정기주주총회일 개최일의 전일을 의미합니다.

※ 실제 처분 수량은 변동할 수 있습니다.

4. 예정된 보유기간 및 처분 시기

- 각 주식보상제도 운영에 따른 지급시점까지 보유 예정이며, 202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사항을 보고할 예정입니다.

위임장

대리인	성 명	
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

상기 대리인에게 2026년 3월 30일 오전 10시에 시행되는 주식회사 실리콘투의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.

< 의결권 행사 내용 >

의안			찬성	반대	
제 1 호 의안	제 24 기 (2025.1.1~2025.12.31)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 포함) 승인의 건				
제 2 호 의안	정관 변경의 건	제 2-1 호	사업목적 추가		
		제 2-2 호	코스닥 표준정관 반영한 문구정비		
		제 2-3 호	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사유 규정 반영		
		제 2-4 호	상법 개정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 변경		
		제 2-5 호	상법 개정에 따른 독립이사 명칭 변경 및 인원 확대		
		제 2-6 호	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총실의무 확대		
		제 2-7 호	상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 의결권 제한 강화		
		제 2-8 호	상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 분리 선출 확대		
		제 2-9 호	부칙		
제 3 호 의안	이사 선임의 건	제 3-1 호	사내이사 김성운 중임의 건		
		제 3-2 호	사내이사 손인호(Son Robert Inho) 중임의 건		
		제 3-3 호	사내이사 최진호 중임의 건		
		제 3-4 호	사외이사 류재영 선임의 건		
제 4 호 의안	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(류재영)				
제 5 호 의안	이사회에서 기 결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				
제 6 호 의안	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				
제 7 호 의안	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서 승인의 건				

2026년 월 일

위임 주주명 : (인)
 주민등록번호 :
 위 임 주식수 :

첨부 : 인감증명서 1부.

주식회사 실리콘투 귀중